

제주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1084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안

담당변호사 조종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주영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2. 22.

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2. 28. 선고 2019가단6623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0,791,09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791,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액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0,791,09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791,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의 가. (1)항 1행의 "N"을 "O"으로, 제1심판결 이유 3.의 가.항 7행의 "445,637,110원"을 "447,321,910원"으로, 같은 항 8행의 "245,637,110원"을 "247,321,910원"으로, 같은 항 9행의 "132,475,890원"을 "130,791,090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2017. 9. 8.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제1심판결 이유 2.의 나.항 참고). 설령 소외 회사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매매예약 당시인 2014. 6. 24.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4. 18.까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P에 대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1965 등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판결에 의하면 P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23,908,100원을 편취하였고, 소외 회사는 P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소외 회사는 위 피해자들에게 P가 편취한 금액 합계 3,923,908,1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2017. 9. 18. 당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은 3,923,908,100원이다. 그런데 2017. 9. 18.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357,012,000원에 불과하므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갑 제8, 12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소외 회사가 2017. 9.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2020. 11. 6. P가 소외 회사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을 인정하여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외 회사와 P의 구체적인 관계, 소외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이에 대한 P의 역할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없다. 특히 P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더라도 P는 소외 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의 명의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기망 및 편취행위는 2017. 9. 18.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③ 소외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을 제13호증의 2)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7. 9. 18. 전후로 상당한 자금 입출금이 계속되었고, T, U, V, W, X, Y, Z, AA, AB, AC 등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일부 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7. 9. 18.경 소외 회사의 경영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건, 판사 정양순, 판사 이범휘